

동남아시아 비즈니스 가이드북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 및 세무·회계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삼일회계법인

머리말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한국 기업 프로젝트 수가 1만개를 돌파했다는 뉴스 기사를 접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베트남에 정말 많이 진출해 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 영화, 드라마, K-POP 등 베트남의 한류 열풍과 함께, 날이 갈수록 베트남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최근 베트남의 세무, 회계 주요 내용에 대한 요청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생각보다 국내에서 베트남의 세무, 회계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정 주제 또는 특정 시점의 이슈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 (컨설팅사들의 뉴스레터 포함)상 몇 페이지 수준의 자료들은 확인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반드시 숙지를 하면 좋을 주요 사항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진출 또는 베트남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관련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 세무, 회계 관련 핵심적인 내용 만이라도 짧은 시간 안에 숙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삼일 구성원이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숙지해 왔던 핵심사항 위주의 동 자료를 편집하여 발간물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동 자료에는 Why Vietnam?을 포함한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요약 정보와 함께, 베트남의 주요 세무 영역에 대한 핵심 내용(2024년말 기준)이 요약 정리되어 있으며, 재무회계 부분에서는 한국의 국제회계기준(K-IFRS) 대비 주요 차이점 요약을 중심으로 그 특징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어, 독자들이 짧은 시간에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 및 세무, 회계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글로벌 정치, 경제의 역학관계, 무역통상 이슈, 국가·지역별 경쟁우위 및 투자정책, 이를 고려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등에 대응하며, 향후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이후의 행선지를 찾는 과정에서 미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주변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동 국가들에 대한 자료는 베트남 보다 더욱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삼일PwC 동남아시아 비즈니스 플랫폼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동남아시아 진출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싶은 열망을 담아, 향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대해서도 현지 진출 시 숙지가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연간 발간물을 발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1 Why Vietnam?

- 베트남의 투자 매력도

2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

- 정치, 경제, 정책 방향성

3 베트남 세무(Tax) 주요 사항

- 법인세, Transfer Pricing, 외국인계약자세, 지분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Tax incentive 및 세무조사,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 동향

4 베트남 회계(Accounting) 주요 사항

- 회계환경, 주요 회계기준 차이, IFRS 도입계획/현황

5 삼일PwC 동남아시아 비즈니스 플랫폼

1

Why Vietnam?



1 Why Vietnam? (베트남의 투자 매력도)

1 안정적인 글로벌 밸류체인을 위한 대체 생산지로서 입지 확립

- 한·중·일 등 주요 제조 국가와의 지리적 인접성, 정치·경제적 안정성, 개방적 통상 환경,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등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에서 해외 시장 진출의 요충지로서 입지 구축
- 한-베트남 FTA 외에도 EU,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국과 15개의 양자 및 다자 자유무역협정 발효
- 풍부한 생산가능인구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주요국 최저임금 비교(월 기준)

(단위: 달러)

베트남(대도시)

'19	'20.1~'22.6	'22.7~'24.6	'24.7~현재
173	183	193	205

중국(광동성)

한국

'18.7~'21.11	'21.12~현재	'21~'23	'24.01~현재
296	324	1,445	1,561

(자료: 한국은행, KOTRA)

* '24.9월 고시환율 적용

2 미-중 무역분쟁 이후 주요국(중국·싱가포르·대만·홍콩·일본) 중국 내 제조공장 베트남 이전 가속

- 미-중 분쟁 이후, 미국의 對중국 평균 수입 관세율은 '17년 3% 대 → '19년 말 20% 대로 급상승
- 관세 이슈로,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베트남으로의 공급망 이전이 활발하여 관련 부품업체, 협력업체들도 동반 진출
- 다만, 트럼프 1기는 중국 제재에 그쳤으나, 트럼프 2기에는 관련국(멕시코·인도·베트남 등)으로 무역 제재 확대될 위험 상존

3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가 누적됨에 따라 인력·정보·기술 등이 집중되어 산업 경쟁력 상승

- 삼성·애플·인텔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이 진출 시 계열사와 관련 기업들도 동반 진출하여,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인프라가 발전하고 인력과 정보가 집중
- 다만,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 과밀로 인한 생산부지 공급난, 인력 수급 경쟁, 전력 부족 등 문제는 유의 필요

1 Why Vietnam? (베트남의 투자 매력도), 계속

4 외국인 투자 (FDI)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시행

- 베트남 정부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 및 사업 확장이 용이한 환경,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년간 법적, 제도적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 지역, 부문, 규모 등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Tax Incentive(조세 면제/감면) 정책의 도입 및 시행은 수년간 급증한 FDI 투자 유치의 주요 기여 요인으로 평가
- 타 동남아 국가들 대비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빠른 입법 및 Investment Support Fund 입법 등 외국인 투자 유인을 위한 정책 마련 노력 지속 중

5 1억 명의 소비 시장

- 세계 16위 인구 국가로 ASEAN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
 - ✓ 중위연령 32.5세로 젊은 국가이나, 2030년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7%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 시작
- 도시화와 인구 증가, 소득수준 증대로 상품 수요 다양화·고급화. 이에 따라 현대적 유통망 급속도 발달, 프랜차이즈 활성화
 - ✓ 도시 인구가 향후 10년간 1천만 명 증가하여, 도시화율이 '20년 37% → '30년 44%에 달할 전망

최근 6년간 베트남 인구와 도시화율 추이

(단위: 만 명)

		'18	'19	'20	'21	'22	'23
도시	인구수	3,263	3,381	3,586	3,653	3,734	3,825
	성장률	2.2%	3.4%	6.1%	1.9%	2.1%	2.4%
전체	인구수	9,538	9,648	9,758	9,850	9,945	10,030
	성장률	1.2%	1.2%	1.1%	0.9%	1.0%	0.9%
도시화율		34.2	35.0	36.7	37.1	37.5	38.1

(자료: KOTRA)

2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



1 베트남에 대한 이해



베트남의 강점과 약점

강점	약점
지정학적 이점 (한·중·일 등 주요 제조 국가와 인접)	전력, 도로 등의 인프라 취약
인구학적 강점 및 저임금 노동력 - 최저임금: 중국대비 70%, 한국대비 15% 수준	트럼프 2기 정부下 무역규제 가능성 - 트럼프 1기는 중국 경제에만 집중하여, 베트남 반사이익
정치·경제적 안정, 개방적 통상 환경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해 글로벌 경기 및 무역갈등 등에 취약 - 베트남의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184%로 전 세계 최상위

2 정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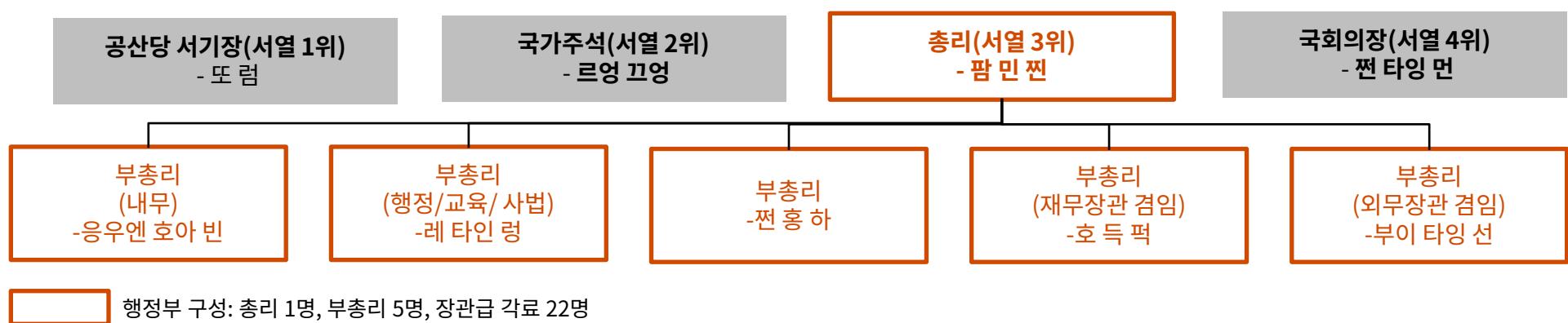
정치 구조: 사회주의 공화제(공산당 유일 정당)

- 공산당: 행정·군사·관료기구를 포함한 국가체제 전반을 통수하는 정치기구로서, 정부·경제·사회는 물론 국회(입법) 활동에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 전당대회: 5년마다 소집되는 베트남 공산당 최대 행사로, 당의 중요 정책 노선과 지도부를 결정

지도부 체계

- 또 럼(To Lam): 공산당 서기장(서열 1위). 공산당 당수에 상응하는 직책으로 당 조직을 총괄 운영
- 르엉 끄엉(Luong Cuong): 국가주석(서열 2위). 국가원수로서 대내외적으로 베트남을 대표
-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서열 3위). 정부 수반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인민위원회 지도
- 쩐 타잉 먼(Tran Thanh Man): 국회의장(서열 4위). 베트남 입법부의 수장

베트남 지도부 구성('24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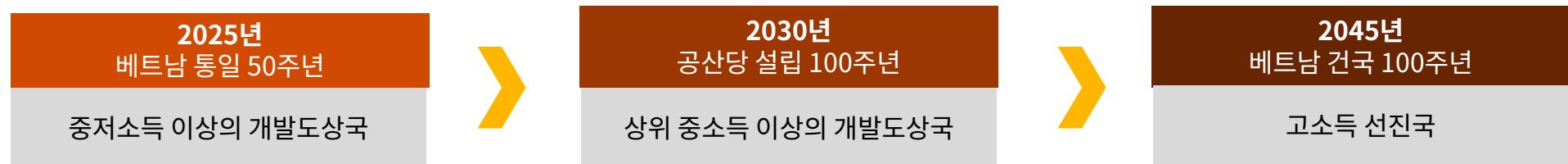


3 정책 방향성

베트남 10개년 및 5개년 사회경제 개발 비전·목표 및 성장전략('21년 1월 발표*)

* 베트남 정부는 10년 단위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이행계획으로서 5년 단위의 목표 제시

- 21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지향 선진국 진입' 비전 선포
- 건국 100주년인 2045년까지 1인당 GDP 1만 2,000달러의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 목표('24년 대비 2.5배)



2021~2030 사회경제개발전략 주요 목표

분야	주요 내용
거시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GDP 성장을 7% / 2030년 1인당 GDP 7,500달러 달성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디지털 경제 비중 30% • 혁신·디지털 전환·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인프라 개발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활용을 통한 수출입 시장 다양화, WTO 질서 준수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 외교 증진 및 다자 기구에 대한 적극적 기여
주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절차 개혁을 통한 영업활동 자유 보장 ▶ 외투 기업의 R&D 및 혁신센터 설립 장려 ▶ 국유기업 구조조정·매각을 통한 효율 개선 ▶ 교통·IT·에너지 인프라 확충 ▶ 고급 인력 양성

4 경제: ① 성장률

'24년 6.1%, '25년 6.5%의 경제성장을 전망(World Bank, '24.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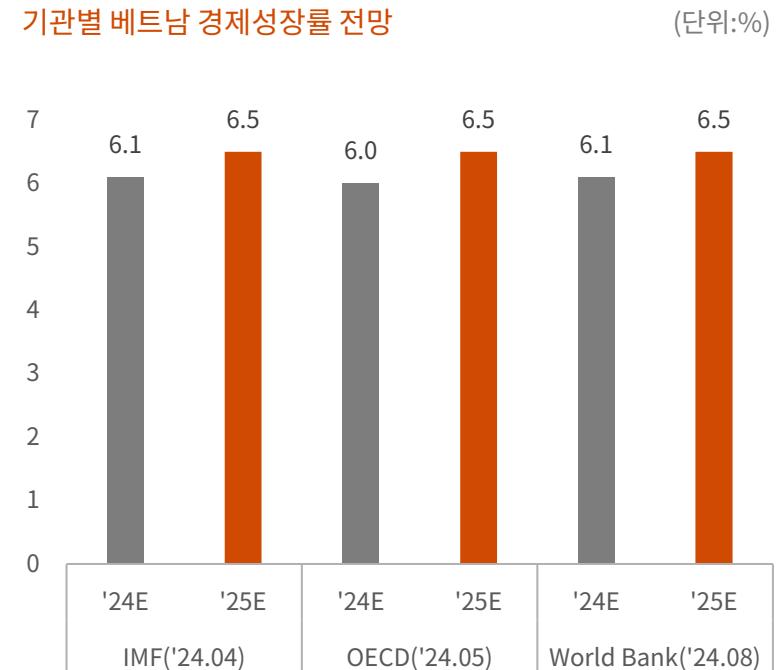
- '24년은 대외 수요 회복에 따른 교역 증가 및 관광산업 회복이 경제 성장세를 견인
- **'25년은 글로벌 거시환경에 따라 6.5~7.5% 사이의 경제성장을 전망**
 - 베트남 정부: 글로벌 거시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6.5~7.0%, 글로벌 상황이 베트남에 긍정적일 경우 7.0~7.5%의 성장 전망
 - 주요 기관: 세계 주요 경제 기관도 베트남 경제에 대해 '24년보다 '25년을 더 낙관적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	'21	'22	'23	'24E	'25E
인구	백만 명	97.6	98.1	99.5	100.3	100.8	101.6
명목GDP	십억 달러	346.3	370.1	407.9	433.7	465.8	505.5
1인당 명목GDP	달러	3,549	3,757	4,102	4,324	4,623	4,977
실질성장률	%	2.9	2.6	8.1	5.0	6.1	6.5
실업률	%	2.5	3.2	2.3	2.0	2.1	2.0
소비자물가상승률	%	3.2	1.8	3.2	3.3	3.7	3.4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5.9	-3.7	5.3	4.1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285	311	277	366	-	-

(자료: KOTRA)

기관별 베트남 경제성장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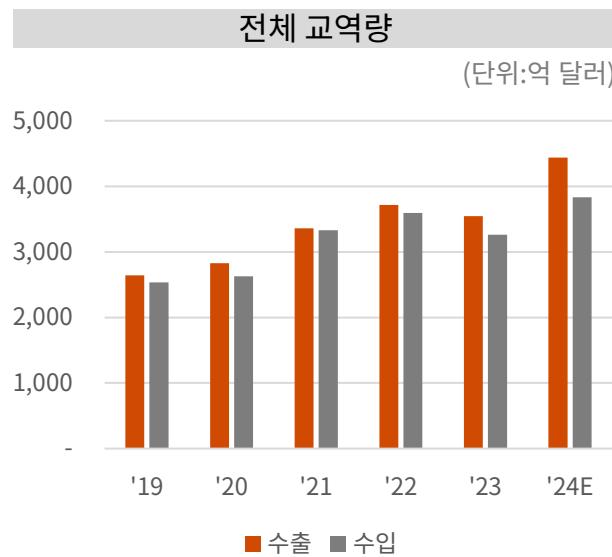
(자료: 각 기관)

4 경제: ② 교역

지난 5년('19~'23년)간 베트남의 대외 교역액은 연평균 7.6% 증가

- [교역액] '19년 5,176억 달러 → '23년 6,810억 달러 (4년 간 31.6% 성장)
- [국가별] **'23년 기준 베트남의 상위 3대 교역국은 중국(25%), 미국(16%), 한국(11%)** 順
한국은 최근 6년('19~'24년)간 베트남의 3위 교역국 지위 차지: 수출액 기준 3위, 수입액 기준 2위
- [품목별] 베트남 주요 수출품은 컴퓨터·전자제품(18%), 통신기기(14%), 기계장비(13%), 섬유의복(9%) 順
주요 수입품은 컴퓨터·전자제품(28%), 기계장비(13%), 직물(4%), 철강(3%) 順 ('24년 3분기 누적 기준)

대외교역 동향



* '24년은 1Q~3Q 누적 증감률 감안하여 연간 수치 예상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국가별 ('24.1~3Q 누적)
(단위: 억 달러)

순위	국가	수출액(비중)
1	미국	881(29.4)
2	중국	443(14.8)
3	한국	188(6.3)
4	일본	180(6.0)
5	네덜란드	94(3.2)

순위	국가	수입액(비중)
1	미국	1,048(37.6)
2	한국	414(14.9)
3	대만	166(6.0)
4	일본	160(5.7)
5	미국	109(3.9)

품목별 ('24.1~3Q 누적)
(단위: 억 달러)

순위	수출 품목	수출액(비중)
1	컴퓨터, 전자제품	527(17.6)
2	전화기, 무선통신	419(14.0)
3	기계, 장비	378(12.6)
4	섬유, 의류	273(9.1)
5	신발	165(5.5)

순위	수입 품목	수입액(비중)
1	컴퓨터, 전자제품	761(28.4)
2	기계, 장비	354(12.7)
3	직물	109(3.9)
4	철강	89(3.2)
5	플라스틱	84(3.0)

4 경제: ③ FDI 투자

누적(1988~2024.9월)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총 4,917억 달러 기록

- [국가별] 누적 기준 1위 투자국은 한국으로 총 883억 달러(총액의 18%) 투자. 다음으로 싱가포르 811억 달러(16.5%), 일본 768억 달러(15.6%), 대만 405억 달러(8.2%) 順
- [투자분야] 제조업에 2,985억 달러가 투자되어 전체 FDI의 60.7%를 차지. 이어 부동산(14.5%), 전력·가스·용수생산(8.5%), 호텔&요식업(3.1%), 도소매 유통 및 수리업(2.4%), 건설업(2.2%) 順

FDI 투자 금액 및 건수

(단위: 억 달러, 건)

	'20	'21	'22	'23	'24.9월	총 누계 (1988~2024.9월)
투자 금액	285	311	277	366	248	4,917
증감률	-24.9%	9.2%	-11.0%	32.1%	22.6%	
투자 건수	9,804	6,520	6,709	7,901	5,990	41,314
증감률	-35.0%	-33.5%	2.8%	17.8%	4.6%	

FDI 투자 분야

	'20	'21	'22	'23	'24.9월	총 누계 (1988~2024.9월)
제조업	47.6%	58.2%	60.6%	64.2%	63.1%	60.7%
부동산 경영업	14.6%	8.5%	16.1%	12.7%	17.6%	14.5%
전력·가스·용수생산 및 판매	18.0%	18.3%	8.2%	6.5%	4.5%	8.5%
호텔&요식업	1.1%	0.5%	0.1%	0.2%	0.4%	3.1%
도소매 유통 및 수리서비스업	5.7%	4.5%	3.6%	3.4%	3.7%	2.4%
건설업	1.9%	1.5%	0.9%	2.4%	2.4%	2.2%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2024.9.30. 기준),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4 경제: ④ 산업

1차 산업(농림어업) 11.5%, 2차(제조업) 37.2%, 3차(서비스업) 42.7% 차지

→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발달이 더딤 * 한국('23년 기준): 1차 1.7%, 2차 26.5%, 3차 63.8%

- 1차 산업(농림어업) : 비중 지속 감소하며, 타국의 일반적인 산업화 및 경제 발전 양상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냄
- 2차 산업(제조업): 제조 및 가공 산업 비중 크게 증가 vs. 광업 비중은 감소
- 3차 산업(서비스업): 완만한 성장 지속. 관광업이 베트남 3차 산업의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

정부는 '30년까지 GDP 내 제조업 40% 이상, 서비스업은 50% 이상이 되도록 집중 육성 계획('22.11월 발표)

GDP 내 산업 비중

(단위: %)		'18	'19	'20	'21	'22	'23.1~3Q	'30년 정부목표
1차 산업	소계	14.6	14.0	14.9	12.4	11.9	11.5	10% 이하
2차 산업	소계	34.3	34.5	33.7	37.9	38.3	37.2	40% 이상
	광업	7.4	6.7	5.6	2.4	2.8	2.5	
	제조가공업	16.0	16.5	16.7	25.1	24.8	23.8	30% 이상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5	4.8	4.8	3.8	4.0	4.3	
	건설업	5.8	5.9	6.2	6.0	6.2	6.0	
3차 산업	소계	41.2	41.6	41.6	41.0	41.3	42.7	50% 이상
	도매 및 소매업	10.9	11.2	11.7	9.4	9.6	10.2	관광업 비중 14~15%
	운수업	2.7	2.8	2.5	4.4	4.7	5.1	
	숙박 및 음식점업	3.8	3.8	3.1	1.7	2.3	2.6	
	정보통신업	0.7	0.7	0.7	3.5	3.5	3.6	
	금융 및 보험업	5.3	5.3	5.4	4.6	4.8	4.7	
	부동산 및 임대업	4.6	4.5	4.4	3.6	3.5	3.5	
	교육 서비스업	3.7	3.8	4.0	3.9	3.7	3.8	

(자료: GSO,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5 한국-베트남 교류 현황 ① 교역

베트남은 한국의 제 3위 교역국(수출 3위, 수입 7위) * 베트남 입장에서도 한국은 3위의 교역국 (수출 3위, 수입 2위)

- 한국의 대외교역에서 베트남의 위상 변화
 - 수출: ('19년) 3위 → ('20년) 3위 → ('21년) 3위 → ('22년) 3위 → ('23년) 3위 → ('24.9월) 3위
 - 수입: ('19년) 5위 → ('20년) 5위 → ('21년) 6위 → ('22년) 7위 → ('23년) 6위 → ('24.9월) 7위
 - 교역: ('19년) 4위 → ('20년) 4위 → ('21년) 4위 → ('22년) 3위 → ('23년) 3위 → ('24.9월) 3위
- [한국의 對 베트남 수출품] 10대 수출 품목이 전체의 약 72% 차지. 특히 IT(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가 54%를 차지
- [한국의 對 베트남 수입품] 10대 수입 품목이 전체의 약 67% 차지. 무선통신(17%), 의류(13%), 반도체(10%), 컴퓨터(9%) 順

한국의 對 베트남 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19	'20	'21	'22	'23	'24.1~3Q
수출 (한→베)	481	485	567	609	535	430
수입 (베→한)	210	205	239	267	259	211
교역 규모	691	690	806	876	794	641

[한국의 對 베트남 주요 수출·수입품(24.1~3Q 누적기준)]

(단위: 억 달러)

수출품			
순위	품목명	금액	비중
1	반도체	128	29.8%
2	디스플레이	84	19.6%
3	석유제품	21	4.9%
4	무선통신기기	19	4.4%
5	합성수지	18	4.1%
6	기구 부품	14	3.2%
7	플라스틱 제품	8	1.9%
8	철강	7	1.5%
9	자동차 부품	6	1.3%
10	계측제어 분석기	5	1.2%

수입품			
순위	품목명	금액	비중
1	무선통신기기	36	17.0%
2	의류	27	12.9%
3	반도체	21	9.8%
4	컴퓨터	18	8.5%
5	산업용 전기기기	12	5.9%
6	신변잡화	9	4.4%
7	목재류	5	2.4%
8	기구 부품	5	2.2%
9	계측제어분석기	5	2.1%
10	디스플레이	4	2.0%

(자료: 한국무역협회)

5 한국-베트남 교류 현황 ② 투자 진출

누적(1988~2024.9월)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는 883억 달러/ 10,052건

- [특징] 초기: 신규/ 제조·가공 공장 설립 → 현재: 증액 투자 형태로 변화 중
- [투자 분야] 제조업에 643억 달러가 투자되어, 전체 투자의 72.8%를 차지. 이어 부동산(10.7%), 전력·가스·용수생산(4.4%), 건설업(3.1%), 호텔&요식업(2.7%), 도·소매 유통 및 수리업(2.0%), 물류운송업(1.0%) 순

한국의 對 베트남 투자: 분야별(1988~2024.9월 누적)

(단위:건, 억 달러)

	건수	투자금액	비율
제조 가공업	4,679	642.5	72.8%
부동산 경영업	237	94.2	10.7%
전력·가스·용수생산 및 판매	29	38.6	4.4%
건설업	926	27.6	3.1%
호텔&요식업	442	23.4	2.7%
도소매 유통 및 수리서비스업	1,710	17.5	2.0%
물류 운송업	210	8.6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69	8.6	1.0%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

최근 5년 간 한국의 對 베트남 투자 동향

(단위: 억 달러)

	신규	증액 투자	M&A, 주식 매입	총 투자액
'19	36.7	15.8	26.7	79.2
'20	12.1	17.4	10.0	39.5
'21	12.0	31.6	5.9	49.5
'22	11.2	28.2	9.4	48.8
'23	18.4	21.6	4.0	44.0
'24.1~3Q	14.9	10.4	3.6	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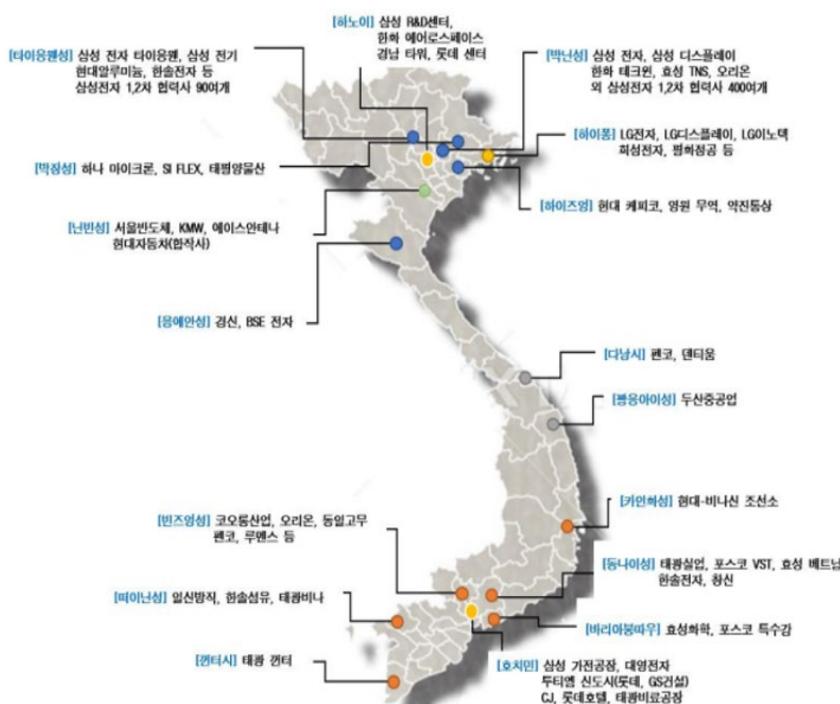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

5 한국-베트남 교류 현황 ③ 진출 기업

해외진출 한국 기업 11,567개 중 베트남 진출 기업은 3,657개로 전체의 31.6% 차지(외교부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2023. 6월 기준)

- 한국은 1989년 삼성물산·대우를 필두로 1990년 LG상사, 이후 1992년 신한은행·GS건설·대우건설 등 꾸준한 진출 지속
- 특히 삼성전자·LG전자·효성·롯데·포스코·현대·대우건설·두산 등 주요 기업들이 진출하여 부동산 개발 및 전자산업 등의 제조업, 조선업 등에서 두각

베트남 진출 주요 한국기업(2023.6월 기준)



(자료: KOTRA 하노이무역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기업명	진출년도	분야
포스코 베트남	2006	냉연강판
효성 동나이	2007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삼성전자 박닌	2008	휴대폰, 테블릿 등
삼성전기	2013	카메라 모듈, PCB
LG전자 하이퐁	2013	백색 가전기기
삼성 디스플레이	2014	OLED, LCD
삼성전자 타이응우옌	2014	휴대폰
LG 디스플레이	2016	휴대폰, 차량 디스플레이
LG이노텍	2016	카메라모듈, 차량용 부품
효성화학	2018	PP

2.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

[Appendix. 베트남 진출 사례: ① 삼성전자]

삼성전자 베트남 타이응우옌(SEVT)은 2017년부터 베트남 기업 중 수익 등의 측면에서 1위*를 차지

*베트남 상위 10대 가운데 외국계 기업은 SEVT가 유일

- 삼성전자는 2013년 3월에 투자 허가를 받아, 2014년 3월 운영 시작
- 삼성은 베트남 최대 외국 투자기업으로, 제조공장 6개/ R&D센터 1개/ 판매법인 1개를 운영 중. 총 누적 투자금은 224억 달러
 - '24년 SEVT는 58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508억 달러를 수출. 이는 베트남 전체 수출의 13.7% 수준 ('24.11월 누적 기준)
- 또한, 200여 개 이상에 달하는 삼성전자 1, 2차 협력사들의 동반진출로 베트남 IT 산업에 막강한 영향력 행사 중
 - 현지 협력업체 육성도 진행. 삼성전자의 베트남 협력업체는 '14년 25개 → '24년 309개로 증가
- 이에 베트남 정부는 삼성에 대해 "법률의 틀 내에서 항상 동행하며, 가장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겠다"며 전폭적 지원을 약속

베트남 10대 기업(2022년 기준)

순위	회사명	형태	주요 사업 부문	설립연도	주요 시장
1	삼성전자 베트남 타이응우옌(SEVT)	외국 기업	전자장비 및 통신기기 생산, 판매	2013	베트남
2	베트남 석유가스공사	베트남 국영	석유 및 가스 탐사, 생산	1975	베트남 및 해외 시장
3	베트남전력공사	베트남 국영	전력 발전, 송전 및 배전	2006	베트남
4	베트남국가석유그룹	베트남 국영	석유 및 석유제품 거래	2011	베트남
5	호아팟 그룹(Hoa Phat Group)	베트남 민간	금속, 철 및 철강 생산가공		-
6	비엣텔 그룹(Viettel Group)	베트남 민간	이동통신	1989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아이티 등
7	빈그룹(VinGroup)	베트남 민간	부동산	2012	베트남
8	베트남 농업 및 농촌 개발은행	베트남 국영	은행	1988	베트남
9	테저이지동_모바일월드(The Gioii Di Dong)	베트남 민간	전자제품 및 통신기기 소매	2009	베트남
10	베트남개발은행	베트남 국영	은행	2012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체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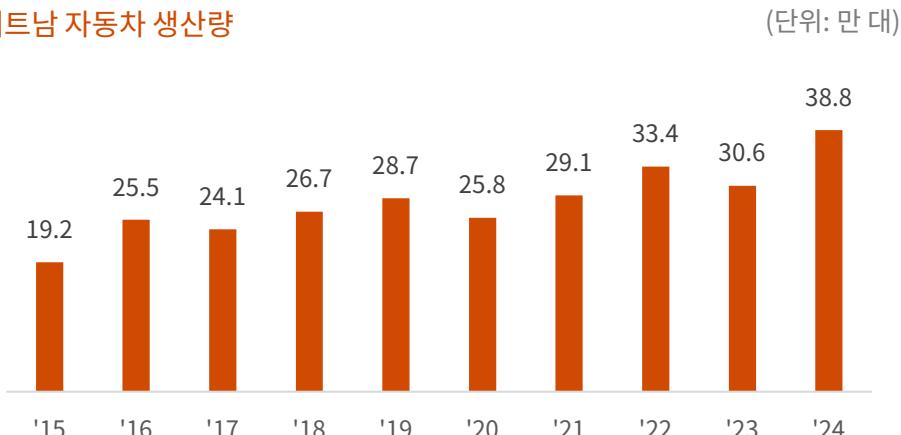
(자료: KOTRA 하노이무역관)

[Appendix. 베트남 진출 사례: ② 현대차]

현대차는 탄콩그룹과 합작을 통해 베트남 자동차 시장 공략하여 1위 입지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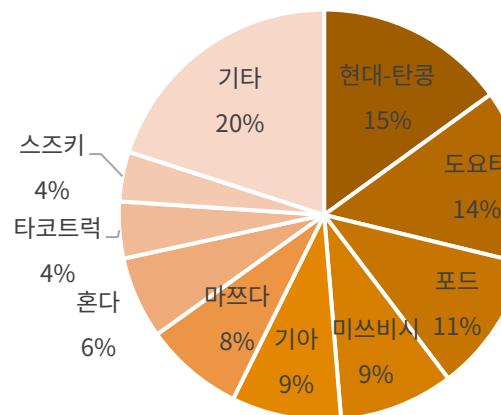
- 베트남 자동차 시장은 동남아시아에서 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에 이어 네번째로 큰 규모
 - 연간 평균 판매량은 45만 여 대로 한국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국민소득이 빠르게 늘고 있어 풍부한 잠재력 보유
- 현대차는 2000년대부터 수출입 방식의 단독 투자로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였으나,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에 밀려 고전
- 이에 2008년부터 탄콩 그룹(Thanh Cong Group)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베트남 시장 공략
 - 탄콩그룹은 1998년에 설립되어 자동차 생산·유통·금융·부동산 등의 여러 분야에 3만명의 임직원을 보유한 대기업
 - 초기에는 생산은 한국, 판매와 유통은 탄콩이 맡는 방식이었으나, 2011년부터는 자동차 생산까지 탄콩 그룹이 진행
 - 2017년에는 50:50 지분으로 현대-탄콩 합작회사(HTMV)를 설립하고, 현대자동차 인사를 또한 베트남으로 보내며 임용
- 현지화 전략이 성공적으로 구현되며, 2020년부터 현대-탄콩은 베트남 자동차 시장 1위 위치 구축
 - 기존 일본기업들은 구매 전~구매까지의 과정에 집중하여 AS(수리/보상)에 미흡. 현대-탄콩은 AS 집중 투자로 차별화

베트남 자동차 생산량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GSO))

베트남 자동차 시장 점유율('24년 상반기 기준)



3

베트남 세무 (Tax) 주요 사항





베트남 주요 세제

구분	영문	국문
1	Corporate Income Tax (CIT)	법인세
2	Transfer Pricing (TP)	이전가격
3	Foreign Contractor Tax (FCT)	외국인계약자세
4	Capital Assignment Profit Tax (CAPT)	지분양도소득세
5	Value Added Tax (VAT)	부가가치세
6	Personal Income Tax (PIT)	개인소득세
7	Tax Incentives	세무 인센티브
8	Tax Audits & Penalties	세무조사 및 가산세
9	Global Minimum Tax legislation	글로벌최저한세 입법 동향

1 베트남 법인세

#	구분	내용	비고
1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 법인세율 20% (단일세율) (참고) 베트남 정부는 민간경제부문 발전을 장려하고 개인사업체의 기업 전환을 목표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저세율 혜택 추진 중 ('24년 국회 제출, 검토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매출액 30억동(1.5억원) ~ 500억동 (25억원) : 17% - 연매출액 30억동(1.5억원) 미만 :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석유/천연가스 사업, 광물자원 채굴사업 기업은 사업 위치/성격에 따라 25%-50% 적용 가능
2	세제혜택 (Tax incen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에 규정된, 투자장려 [지역], 투자장려 [부문], 투자[규모] 조건을 충족하는 신규 투자프로젝트 (특정 사업 확장 프로젝트)에 부여 기본적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Tax Incentive scheme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Tax Incentive Scheme 존재 → [7] Tax incentive 슬라이드 참조
3	과세소득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수익(국내, 해외원천 불문) – 손금인정 비용 + 기타소득 연간 법인세 신고시, 회계상 이익 vs. 세무상 이익의 차이를 소명하는 세무조정 사항들이 포함된 신고서식 작성/제출 	
4	결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상 결손금은 향후 연속된 5개년 간 이월 공제 가능 감면/면제 등 세제혜택 대상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이익)은 세제혜택 대상이 아닌 활동의 이익(손실)과 상계 가능 연결납세나 동일 그룹사 손실 공제 등에 대한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급공제 불허
5	신고 /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예납 의무 존재. 단, 과세연도 중 납부된 중간예납 금액이 최종 법인세 신고 (과세연도 후 3개월 이내) 금액 대비 80% 이상이어야 함 최종 법인세 신고는 연간 기준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세번째 달 말일(일반적으로 3월말) 까지 신고 및 잔여금액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예납 80% 미달 분에 가산세 (지연납부이자) 적용 일반적 표준 과세연도 : 역년(1~12월) → 다른 과세(회계)연도 사용시 과세당국 통지 의무

1 베트남 법인세, 계속

#	구분	내용	비고
6	이익 배당 송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연도 종료 후 및 베트남 내 투자 종료 시, 이익잉여금의 모회사향 배당 송금 허용 외국투자자 또는 베트남 내 피투자회사는 이익배당의 송금 예정일로부터 7 영업일 이전까지 세무당국에 송금계획 통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월결손금 상태인 경우, 투자등록시의 의무사항 불이행시 등 배당 송금 불가능한 상황 발생 가능
7	손금불산입 비용 예시	<p>베트남 법인세법 규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개별노동계약서, 단체노사협약서, 혹은 사규에 기술되지 않거나, 실제 지급되지 않은 직원 보수지급 관련 비용 1개월평균급여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직원 복리후생비 (직원의 가족에게 지급된 복리후생비 포함, 의무 가입이 아닌 의료 및 상해 보험도 직원 복리후생비로 간주) 종업원을 위한 자발적인 (법률에 정한 의무가 아닌 사용자가 임의로 가입한) 연금 및 생명보험 납입금으로 종업원당 월 3 백만 동 초과 분 노동법 규정을 초과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 및 퇴직급여 지급분 법정 자본금의 미납입액에 상응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베트남중앙은행 고시이자율의 1.5 배를 초과하는 개인에 대한 이자 EBITDA 의 30% 한도를 초과하는 특정 이자 (이전가격 규정 참조) 재고자산평가감, 대손충당금, 유가증권평가감, 제품보증비용, 건설공사에 대한 충당부채로서 법규정을 위배하여 적립한 경우 외화 부채(매입채무)가 아닌 항목에서 기인한 외화환산손실 교육, 의료보건, 자연재해, 빈민자선사업용 주택건설, 또는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부금 행정벌과금, 과태료, 지연납부이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을 위한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창출과 연관되어야 함; and 비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 and : 2천만동(약1백만원) 이상시 은행이체증명서 필수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비용 <p>* (참고) 보험사, 증권사, 복권사업자 등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되는 비용에 대한 재무부 (MoF) 별도 규정 존재</p>

2 베트남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	구분	내용	비고
1	특수관계자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cree 132에서 특수관계자로 정의되는 지분 보유 기준은 25% (특정 상황에서는 특정 개인도 특수관계자로 간주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cree 132/2020/ND-CP 2020 회계연도부터 적용
2	정상가격 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들 허용 허용되는 정상가격 범위 (acceptable arm's length range) : 35th ~ 75th 백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적가격, 재판매가격, 원가가산, 이익분할, 비교가능이익 방법 등
3	비교가능대상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한 국내 시장 또는 지역에서 비교가능대상을 우선적으로 찾고, 이후에 유사한 산업환경 및 경제발전도 갖춘 지역 내 타 국가로의 확장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비교 우선
4	TP신고서식 (TP declaration fo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cree 132에 따른 이전가격신고 서식(*)은 연도별 법인세 신고시 함께 제출 (*) 특수관계자 거래와 제3자 거래에 대한 손익 구분을 포함한 세부정보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관계자간 거래내용, 사용된 정상가격 결정방법, 특수관계자 거래가 정상가격이라는 납세자의 confirmation (또는 자발적조정 수행) 신고 (구비되어 있는) Local File, Master File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내용 기재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세율이 동일]하고 [세제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베트남 내의 기업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 → TP 신고서식에 해당 거래 정보의 기재 의무 면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TP 신고서식은 법인세신고시 매년 '제출' 의무 Decree 132는 회사가 적용한 TP방법이 베트남에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면 안된다고 규정 → 손익의 후속적 하향 조정을 불허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5	TP 문서화 (TP Docum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관계자 간 거래 있는 베트남 내 납세의무자는 [베트남어로 작성된] TP documentation 작성/구비 필요 (원칙적으로, 법인세신고 제출시점 이전 작성) Decree 132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조건 충족시 TP Documentation 작성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기간 중 매출 500억동(25억원) 미만 & 특수관계자거래총액 300억동(15억원) 미만 매출 2천억동(1백억원) 미만이고 &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며 & 업종별이익률(EBIT/매출) 조건 달성 납세자 (유통업5%, 제조업10%, 임가공업15%) 세율이 동일하고, 세제혜택 받지 않는 베트남 기업들 사이에서 만의 특수관계자 거래 APA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협상이 타결되고 연간 APA 이행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TP 문서화(3단계)는 구비 의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cal File, Master File, CbCR TP보고서 구비 시, 세무조사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 납세자 주장이 포함된 문서로서, 조사 과정 중 인용 대상이 되며, 보고서가 없을수록 세무당국의 자의적 해석/처분 가능성 ↑

2 베트남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계속

#	구분	내용	비고
6	TP Aud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규정(Decree 132)은 납세자가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간주될 경우,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조정 목적으로 자체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최근 이전가격 세무조사 실시 건수에 있어 뚜렷한 증가 추세 + 갈수록 정교한 조사방법 적용 중 (∴ <u>이전가격 변경 처분에 의한 추징 가능성 ↑</u>) 자주 이슈가 되는 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가격 문서화에서 인용된 비교대상 회사들의 타당성, - 그룹(주로 한국 본사에) 지급된 비용의 적절성(비용 인정 가능성) - 수년 간 회사 및 특정 부문에서의 이익 변동 등 이전가격 조사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 유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으로 손실을 인식하는 기업 - 손익이 극심하게 변동하는 기업 (예: 전기에 높은 이익, 당기에 낮은 이익 등) - 그룹 내 특수관계 기업에 유의적인 서비스비 및 로열티를 지급하는 기업 - 이전에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 기록이 없는 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대부분의 일반 세무조사에 이전가격에 대한 조사 포함 중 <p>※ (참고) 베트남은 아직까지 APA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타결 사례 없음</p>
7	EBITDA 30%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cree 132에 따라, 이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상 손금 인정 한도를 EBITDA (이자. 법인세.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의 30%로 규정 동 한도는 순이자비용 (한도 비교 전, 이자수익과 상계 된 후의 이자비용)에 적용 손금불산입된 이자비용은 후속 5개년까지 이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 2017-2019년까지의 현지 규정(Decree 20)상 한도인 EBITDA의 20%에서 증가됨

3 베트남 외국인 계약자세 (FCT)

#	구분	내용	비고
1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당사자(외국투자자 소유기업 포함)와의 계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의’ 법인 및 개인에 적용 • FCT는 기본적으로 해외로의 지급(Payment)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그 대상은 이자비용, 로열티비용, 서비스비용, 리스료/임차료, 보험료, 운송서비스비용, 증권매매로부터의 수익, 베트남 내에서 공급된 재화로부터의 수익 또는 베트남 내에서 유관 용역이 제공된 재화로부터의 수익 등을 포함 • 해외 법인이 베트남 내에서 재화 유통 및 서비스 제공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유통 방식의 경우 FCT 과세 대상 (예: 해외업체가 재화의 소유권 보유/ 유통, 광고, 마케팅 비용 부담/ 재화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가격 결정을 하는 경우/ 베트남기업을 고용, 위임하여 베트남에서 재화 유통 및 서비스 제공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가 베트남 국경을 통과한 이후 관련된 책임,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베트남 내의 유관 용역 수행이 없는, 순수한 재화의 공급은 FCT 과세대상에서 제외 • 베트남 외부에서 수행/소비된 용역, 베트남 외부에서 전적으로 수행된 기타 용역(*)도 FCT 과세대상 제외 (*) 수리, 교육, 광고판촉 등
2.1	배당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주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따른 송금 시 원천징수되는 세금 없음 	
2.2	이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 설립된 외국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지급에 대하여 법인세 원천징수(5%) 적용 • 특정 외국 정부나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역외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시에는 원천징수 면제 적용 가능 • 채권 및 해외법인에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이자지급도 5% 원천징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베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의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 슬라이드 (28-30p.) 참조
2.3	로열티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권, 지적재산권(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포함)의 이전,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의 이전에 따라 해외법인에 지급되는 로열티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10%)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베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의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 슬라이드 (28-30p.) 참조

3 베트남 외국인 계약자세 (FCT), 계속

#	구분	내용	비고	
3	납부방식	<p>(1) [공제법] 외국인계약자를 VAT 납세의무자로 등록해야 하고, 베트남 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부가세 신고 수행 (매입부가세 공제 가능).</p> <p>외국인계약자에 대해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에만 공제법 적용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베트남의 거주자임 - 베트남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182 일 초과 소요됨 - 베트남 회계시스템(VAS) 채택/준수하며, 납세자 등록절차 완료 및 <i>Tax Code</i> 발급 <p>(2) [직접법(원천징수법)] 외국인계약자는 VAT 납세의무자로 등록X, 법인세/부가세 신고 X → 법인세, VAT는 베트남 발주처에 의해 원천징수(경제적 활동 종류에 따라 다양한 인정세율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세액 = 외국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x 규정된 인정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법(원천징수법), 공제법, 혼합법 3가지 방식 선택 가능 - 실무상 주로 직접법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혼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T: 납세의무자등록 + 공제법에 따른 VAT 신고/납부 - 법인세: 매출액에 직접법 하 인정세율 적용 	
4	직접법 하 적용 세율 (규정된 인정세율)	업종	간주 부가세율	간주 법인세율
		베트남 내 재화 공급 또는 재화 공급시 유관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내에서만 재화가 이동하는 수출-수입거래 / 베트남 내 재화의 유통 - 판매자가 베트남 내에서 재화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Incoterms 형태의 재화 인도 등 	면제	1%
		용역	5%	5%
		식당, 호텔 및 카지노 운영 용역	5%	10%
		자재/기계장치/설비의 공급이 없는 건설 및 설치 용역	5%	2%
		자재/기계장치/설비의 공급과 함께 제공되는 건설 및 설치 용역	3%	2%
		운송 ((*) 국제 운송의 경우에는 0%의 부가세율 적용 대상)	3%(*)	2%
		이자	면제	5%
		로열티 ((*)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 및 지적재산권 (저작권, 산업체산권 포함) 이전은 부가세 면세 대상. 상표권 등 기타 로열티는 부가세 대상이 될 수 있음)	면제(*)	10%
		증권매매	면제	0.1%
		기타	2%	2%

3 베트남 외국인 계약자세 (FCT), 계속

#	구분	내용	비고
5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기업은 Tax Code가 부여되며, “분기별로” 베트남국세청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세금 신고/납부 해외 기업들이 베트남에 ‘직접’ 납세자등록, 세금신고/납부 <u>マイ행사</u>, <u>베트남 이해관계자들</u>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내 고객이 등록된 사업자인 경우 : 해외기업을 대신하여 원천징수하여 세금 신고/납부 (현 FCT 체계와 유사) - 베트남 내 고객이 개인인 경우 : 은행 또는 결제중개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하여 세금 신고/납부 (베트남 세무당국은 이러한 원천징수를 위해 은행 및 결제중개회사에 해당 해외기업들의 상호 및 웹사이트 정보 제공) - 베트남 내 개인 고객이 은행과 결제중개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수행할 수 없는 카드 또는 기타 결제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 은행 및 결제중개회사에서 해외기업에 지급된 결제 기록을 추적하여 매월 베트남 세무당국에 보고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Circular 80/2021] 고정사업장 없이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디지털 사업 및 기타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해외 기업에 대한 세무신고 체계 규정 ‘22.3월 베트남 국세청(GDT)은 베트남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직접 세무등록, 신고/납부를 수행하기 위한 포털 공식 출범 (국세청은 최근까지 등록된 해외 기업 명단도 공개)
6	한베조세조약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중과세방지협정] 국제간 무역이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동일소득에 대하여 관계국들의 독자적 과세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 외국인계약자세 중 [법인세]는 국가간 조세조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베트남 내 자동 적용되지 않음(청구 및 승인 필요) → <u>부가가치세는 경감 불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외국인계약자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5% 법인세 원천징수는 외국인계약자가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조세조약에 의거 면제 가능 조세조약 적용 관련 절차는 ’22.1.1부터 기준 [통보]에서 [승인] 사항으로 변경되었고, 조세조약 청구에 대한 세무당국의 검토/평가 기한이 도입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당국은 서류 접수 후 [40일 이내]에 세액의 면제/경감을 승인하거나 청구 거부 사유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결정을 내려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베조세조약상, <u>베트남 내 <고정사업장> 보유 시에만 사업이윤에 대한 베트남의 과세권 인정</u> 베트남 세무당국은 고정사업장에 대해 <u>공격적인 해석 적용 중</u> 한국 세법상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베트남에서 부과된 FCT에 대해 <u>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u> 양국 국세청 간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견에 따른 이중과세 이슈 다수 발생

3 베트남 외국인 계약자세 (FCT), 계속

[참고] 한베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일부 규정 발췌

구분	조세조약 내용	영향
고정 사업장	<p>제7조 사업이윤</p> <p>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 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u>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u> (중략)</p> <p>-----</p> <p>제5조 고정사업장</p> <p>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u>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u>를 말한다.</p> <p>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p> <p>가. 관리장소 / 나. 지점 / 다. 사무소 / 라. 공장 / 마. 작업장 및 /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p> <p>3. <u>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는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u></p> <p>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p> <p>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p> <p>나. 저장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p> <p>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p> <p>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의 목적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p> <p>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에서 조세조약은 자동 적용되지 않고, 청구 (DTA Claim) 후 승인 필요 • (참고) 이중과세 이슈 사례 : 한국기업 본사의 베트남 활동에 대한 고정사업장 형성 여부에 대해 양 국세청 간 의견 존재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세무 당국은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권 있음 주장 및 과세 (조세조약상 감경 적용 승인 거절 및 FCT 과세) → 한국 세무당국은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베트남에 과세권 없음 판단 (외국납부세액공제 불허) → 한국기업의 베트남 내 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과세하는 [이중과세] 발생 → 상호합의(MAP) 등 추가 절차 통한 이중과세 해소 노력 필요

3 베트남 외국인 계약자세 (FCT), 계속

[참고] 한베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일부 규정 발췌, 계속

구분	조세조약 내용	영향
이자	<p>제11조 이자</p> <p>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p> <p>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FCT가 더 낮음)</p> <p>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당국을 포함한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이자,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당국을 포함한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의해 보증되거나 간접적으로 재원이 조달된 채권과 관련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이자는 그 한쪽 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대출의 경우, 면세되는 이자는 앞서 언급된 기관들의 계좌에서 직접 송금된 대출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로 한다.</p> <p>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및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p> <p>가. 한국의 경우</p> <p>(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의 각서교환에 의해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고 합의된 기타 금융기관…(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기업이 한국의 중앙은행 및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등의 경우 FCT 대상 면제 가능 (DTA Claim 신청 후 승인 필요)
로열티	<p>제12조 사용료 및 기술용역 대가</p> <p>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p> <p>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는 그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가 발생한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다.</p> <p>가. 사용료의 경우</p> <p>(1) 특허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자금과 관련된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p> <p>(2) 그 밖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p> <p>나. 기술용역대가의 경우, 그러한 대가 총액의 7.5퍼센트</p> <p>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대가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대가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국가에 소재한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지급 로열티에 부과되는 FCT-법인세(10%) 대비 낮은 세율 (5%) 적용 가능 (DTA Claim 신청 후 승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권, 의장권, 기술 이전 등 • (참고) 기술용역대가(<i>Technical Assistance Fee</i> 등) 7.5% 한도가 2022년 개정으로 추가 (FCT-법인세 용역비 5%보다 큼)

4 베트남 지분양도소득세 (CAPT)

#	구분	내용	비고
1	적용 대상 및 세액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소재 회사의 지분 양도시(매도자의 거주자/비거주자 불문) 과세금액 : [지분 양도가액 - 취득가액(최초 매각시는 법정자본금 출자액) - 매각부대비용] X 20% 채권 및 베트남 내 공개회사 주식 등 증권 양도의 경우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회사의 증권 매각시 : [전체 양도가액] X 0.1%(인정세율)로 과세 - 베트남 거주자(내국법인)의 증권 매각시 : [매각에 따른 이득] X 20% 세무당국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더라도) 거래가격이 시장 공정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동일기업 및 유사기업 거래가격을 기초로 양도가액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의 양도소득세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법인세 (CIT) 내에서 규정 중
2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분양도세는 매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베트남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지급할 매각가액에서 지분양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과세당국에 신고 - 매도자, 매수자 모두 외국법인인 경우, 지분이 매각되는 베트남회사가 지분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책임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 기반의 신고 이며, 신고제출 기한은 세금 납부 의무발생일로부터 10일 내 (신고와 동시에 납부)
3	조세조약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베트남 이중과세협정(DTA)에 따른 면제 신청 가능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분 양도대상 법인이 부동산 과다법인(베트남 내 부동산의 자산 비중 50% 초과)인 경우, 베트남 내 과세권 있음 (2) 부동산 과다법인 아닌 경우, 지분 15% 이상 보유한 한국 기업이 15% 이상 양도시 베트남에 과세권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내 부동산 과다법인이 아닌 법인의 지분이면서 & 15% 이상 보유 / 양도 요건 불충족시 <p>→ 베트남 면제 신청 가능</p>

구분	조세조약 내용	영향
지분 양도	<p>제13조 양도소득 (중략)</p> <p>4. 한쪽 체약국 (한국) 거주자가 전체 주식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주식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 (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있다.</p> <p>5. 제4항에서 언급된 주식을 제외한 다른 주식이 한쪽 체약국(베트남) 거주자인 회사에 대한 지분참가비율이 최소 15퍼센트인 경우 그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한쪽 국가(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조약상 베트남에 과세권이 있다고 보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FCT 면제 가능 (DTA Claim 신청 후 승인 필요)

5 베트남 부가가치세(VAT)

#	구분	내용	비고
1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내에서 생산, 판매, 소비를 위해 사용된 재화 및 용역에 부과 수입된 재화의 관세부과 과세가액에도 부과 (수입자는 관세청에 수입관세와 함께 수입부가세도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FCT 통해 부과
2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 수출된 재화(무관세지역 및 수출가공기업(EPE)에 판매된 재화, 수출을 위해 가공된 재화, 국내에서만 이동한 수출을 위해 가공된 재화, 특정 수출 용역, 수출가공기업(EPE) 위해 제공된 건설/설치 용역, 항공·해운·국제운송 용역) 5% : 일반적으로 생필품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경제 영역에 적용 (상수도, 학습자료, 서적, 미가공식재료, 의약품/의료장비, 사료, 다양한 농산품 및 농업서비스, 기술/과학 용역, 고무 라텍스, 설탕 및 그 부산품, 특정 문화, 예술, 스포츠 용역/제품 및 복지 주택) 10% : 표준세율로서, 열거된 “부가세 대상 제외”, “면세”, “0%”, “5%”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에 적용 (현재 2025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2% 인하된 8% 적용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5월, 사회 경제적 회복 촉진을 위해 ('23년 11월부터 '24년 6월말까지) 한시적 시행했던, 10% 부가가치세율 적용 재화/서비스에 대한 2% 부가세 인하를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결의문 승인 2024년말, 해당 2%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2025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는 결의문 승인
3	VAT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법 (일반적) : 부가세 납부세액 =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에 맞게 모든 거래에 대한 장부기장 유지하고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사업자 중 공제법을 적용하기로 등록한 사업자에 한해 적용 (요건1) 부가세 과세대상 매출이 연간 10억동(약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이고, (요건2) 공제방식의 부가세 신고를 자진하여 등록한 경우 [매출부가세] 과세표준에 적합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재화의 경우, 관세부과 과세가액에 수입관세, 특별소비세(해당시), 환경보호세(해당시)를 가산한 가격에 부가세 적용 [매입부가세] 국내 매입은 세금계산서 기준, 수입은 세금납부영수증에 기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천만동(약1백만원) 이상의 지급에 대한 매입부가세 공제는 은행을 통한 이체증빙 구비시에만 공제/환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판매자에 대금 지급시 원천징수된 매입부가세 (FCT로 원천징수한 부가세)는 납세자가 부가세 과세대상 공급시 공제 사업자가 면세 재화/용역 공급하는 경우, 구입시 지급한 매입부가세 환급/공제 불가 소규모(매출10억동 (약5천만원) 미만) 등 사업자는 직접법 적용 가능

3. 베트남 세무 (Tax) 주요 사항

5 베트남 부가가치세(VAT), 계속

#	구분	내용	비고
4	신고 /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에서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조직 및 개인은 부가세 사업자 등록 의무 부가세 사업자는 의월 20 일까지 월별 부가세 신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납부의 경우 (전년도 연간 매출 500억동 (약 25억원) 이하 시 적용 가능) 다음 분기 첫 번째 달의 말일까지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의 지점 존재 시, 지점별 별도 사업자 등록 진행하고, 각 지점 영업활동에 대해 부가세 신고 수행
5	환급(Ref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에서 부가세의 환급은 다음을 포함하여 특정한 경우에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입부가세 환급 대상액이 3억동(약 1.5천만원)를 초과하는 수출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 환급은 월별 혹은 분기별 납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에 따라 이루어짐 - 수출 매출 관련 매입부가세액의 경우 (VAT 환급조건 충족시) 수출 매출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환급 가능 (2) VAT를 공제법으로 신고하는 기업의 신규 프로젝트들 중 영업 전 투자단계이면서 (건설비 등으로 인해) 누적 매입부가세 공제액이 3억동(약 1.5천만원) 초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건부 투자 프로젝트 또는 규정된 법정자본금이 아직 납입되지 않은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프로젝트 운영이 시작되어 매출이 발생하면 더 이상 VAT 환급은 불가 (발생한 매출부가세와 상계) • 일정 기간 동안 납세자의 (환급 대상이 아닌)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를 초과하는 경우, 미래의 매출부가세에서 상계하기 위해 해당 초과분 이월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으로 베트남의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는, 환급 전 VAT에 대한 세무조사 수행 (조건 불충족 또는 증빙문서 부적절시 VAT 환급 거부 가능) 규정상 환급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세무조사 등에 따른 환급 지연/거부 등 이슈 다수 발생
6	전자세금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7월 1일부터 베트남 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의무화 	

3. 베트남 세무 (Tax) 주요 사항

5 베트남 부가가치세(VAT), 계속

#	구분	내용	비고
7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닌 재화/용역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을 제외한 보상금, 보너스, 보조금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의해 베트남 외부에서 제공된 특정 용역 (예컨대, 운송수단, 기계장치 및 설비의 수리, 투자 및 무역거래의 판촉, 광고, 마케팅, 해외 용역 및 재화 판매를 위한 중개활동, 교육훈련용역, 특정 국제통신용역 등) 아직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았거나 기초 가공만 거친 농산물의 판매 자본의 현물출자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다른 이해관계자를 위해 대금만 회수하여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받는 중개수수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매출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관련 매입부가세는 공제 가능
8	면세 대상 재화/용역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농산품 전년도 1억동 (약 5백만원) 이하의 매출액을 기록한 개인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토지사용권(LUR)의 양도 지분의 양도 외환 거래 특정 보험서비스 (생명보험, 건강보험, 농산물관련 보험 및 재보험 포함) 의료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 용역 교육 및 훈련 신문, 잡지 및 특정 서적의 인쇄 및 출판 공공 버스에 의한 승객 운송 용역 기술 및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서비스의 이전 (소프트웨어 해외수출은 0%세율 적용대상으로 분류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구입시 납부한 매입부가세는 환급/공제 불가
9	수출된 재화/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관세지역(non-tariff area)에 소재한 회사를 포함하여, 해외법인에게 판매된 재화 및 직접적으로 제공된 용역은, 베트남 외부 또는 무관세 지역 내에서 소비되었다면 0%세율(영세율) 적용 수출된 재화 및 용역에 0%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빙 서류들이 요구됨(예: 계약서, 은행계좌이체증빙, 통관신고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세율이 적용된 수출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관련 매입부가세는 공제될 수 있음
10	자가사용 재화/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적인 목적으로 소비된 재화와 용역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되는 경우 매출부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함 	

6 베트남 개인소득세(PIT)

#	구분	내용	비고
1	거주자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 연도 1년 동안 183일 이상을 베트남에 체재한 경우, 또는 베트남 내에 항구적 주거(영구/임시 거주증상 기재된 등록된 주거지 또는 한 과세연도 동안 183일 이상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를 가지고 있으며, 타 국가의 거주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거주자: 전세계(베트남 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어디에서 지급/수령했는지 불문하고) 베트남 내 개인소득세 납세의무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 누진세율 적용 / 기타소득: 다양한 단일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비거주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관련 근로소득: 20% 단일세율로 과세 비근로소득 : 다양한 단일세율 적용
2	과세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연도 1역년(Calendar Year) 기준 첫 입국일로부터 연말까지 베트남에 183일 미만 체류한 경우, (입국 첫해에 한하여) 개인의 과세연도는 입국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기간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후부터 과세연도는 1역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째연도와 둘째연도 간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는, 첫째연도에 대한 납부세액을 일할하여, 둘째연도 신고시 공제 적용
3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비과세] 근로소득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장경비지급 통신료 지급 및 사무용품비 근무복(유니폼) 지급, 현금으로 지급시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근로자(외국인, 베트남인)의 근로를 위한 1회성 거주이전비 지원 출퇴근 비용 지원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거주자와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매년 1회 본국 출입국 항공료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주재원 자녀의 베트남 내 소재 초등학교 이상 고등학교 이하 자녀 학비/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국적자의 외국 소재 초등학교 이상 고등학교 이하 자녀 학비 직원 교육훈련비 / 중식대 현물지급비(현금 보상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복리후생비(예: 시설회원권 사용료, 단체의료보험 등) 납입금을 근로자에게 환급하지 않는 국내/해외 특정 임의보험계약에 대한 회사부담분 (예: 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결혼식, 장례식 부조금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금전적 급여 외에도 복리후생적 급여도 포함 좌기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여러가지 조건 및 제약 존재

6 베트남 개인소득세(PIT), 계속

#	구분	내용	비고
4	근로소득 이외의 개인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외의 과세되는 개인소득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소득 (연간 1억동 (약 5백만원) 초과하는 임대소득 포함) - 투자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 유가증권(주식) 양도소득 - 부동산 양도소득 - 1천만동(약50만원) 초과하는 상속 소득 - 1천만동(약50만원) 초과하는 상금/상품 (카지노에서 발생한 소득 제외) - 1천만동(약50만원) 초과하는 저작권/프랜차이즈/로열티의 이전 및 선물 수령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단일세율로 과세
5	비과세 개인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과 생명보험사로부터 수취한 이자소득 • 보험 증권으로부터 수취한 보험 보상소득 • 사회보험법률(또는 해외의 등등한 규정) 하에서 수령한 퇴직연금 • 자발적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되는 월 퇴직연금 • 친족 간에 양도한 부동산에서 기인한 소득 • 친족 간에 수령한 상속소득/증여소득 • 카지노 상금 	
6	외국납부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개인소득이 있는 베트남의 거주자가 해외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는 해외법상 적법하게 납부하였고 이에 대해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가능 	
7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보장 보험인 사회, 건강 및 실업보험 종업원 부담액 • 자발적으로 가입한 연금상품계약에 대한 납입액 (일정 한도 이내의 금액에 한함) • 특정 허가된 자선단체에 대한 종업원 기여금 • 각종 공제 : 1) 인적 공제 : 11백만동(약55만원)/월 + 2) 부양가족 공제 : 월4.4백만동(약22만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공제는 자동적으로 부여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는 적격 공제대상 부양자 등록 및 세무당국에 증빙서류 제출 필요

6 베트남 개인소득세(PIT), 계속

#	구분	내용	비고
8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되는 소득을 보유한 개인들은 각각의 세무신고 코드(tax code)가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들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코드 등록절차 진행 (직원이 등록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후속적으로 지역세무서에 제출) - 근로소득 외의 개인소득이 있는 개인들은 각자의 거주지역 관할 세무서에 개인소득세 신고코드 등록 • 베트남 법인은 임직원 급여를 원천징수하여, 월별로 신고하는 경우는 근로소득 수령일 의월 20 일까지, 분기별로 신고하는 경우는 보고대상 분기의 의월 말일까지 신고/납부 수행하고, 연 전체 기준의 연말정산을 수행하여 근로소득세의 연기준 납부액을 최종 정산함 • 개인소득세 최종 신고/납부에 대해, 회사는 과세연도의 말일에서 세 번째 달의 말일까지 완료하고, 개인은 과세연도 말일에서 네 번째 달의 말일까지 완료해야 함 • 베트남 파견이 종료되는 거주자인 외국인 주재원들 또한 근로소득 최종 정산을 수행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소득세가 성실하게 납부/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그간 납부된 내역에 대해 검토해야 하고, 기준에 과다 납부된 개인소득세는 개인소득세 신고코드(tax code)가 존재하는 개인에 한해 환급 가능 • 베트남 내 회사는 외국계약자의 근로자들이 베트남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 해당 개인들이 베트남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7일 이전에 지역 세무당국에 해당 인원들에 대한 정보 (이름, 소득정보, 여권번호 등 포함)를 제공하는 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 비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각자 과세대상 비근로소득 유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소득세 규정은 수령 기준에 따라 실제 소득을 수령한 시점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함 (연 단위로 신고/납부가 가능한 임대소득은 제외) 	

6 베트남 개인소득세(PIT), 계속

#	구분	내용																																		
9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자 - 근로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table border="1"> <thead> <tr> <th>연 소득(백만동)</th><th>월 소득(백만동)</th><th>세율</th><th>연 소득(백만동)</th><th>월 소득(백만동)</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0~60 (약 0 ~ 3백만원)</td><td>0 ~ 5</td><td>5%</td><td>384~624 (약 19.2 ~ 31.2백만원)</td><td>32 ~ 52</td><td>25%</td></tr> <tr> <td>60~120 (약 3 ~ 6백만원)</td><td>5 ~ 10</td><td>10%</td><td>624~960 (약 31.2 ~ 48백만원)</td><td>52 ~ 80</td><td>30%</td></tr> <tr> <td>120~216 (약 6 ~ 10.8백만원)</td><td>10 ~ 18</td><td>15%</td><td>960 초과 (약 48백만원 초과)</td><td>80 초과</td><td>35%</td></tr> <tr> <td>216~384 (약 10.8 ~ 19.2백만원)</td><td>18 ~ 32</td><td>20%</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연 소득(백만동)	월 소득(백만동)	세율	연 소득(백만동)	월 소득(백만동)	세율	0~60 (약 0 ~ 3백만원)	0 ~ 5	5%	384~624 (약 19.2 ~ 31.2백만원)	32 ~ 52	25%	60~120 (약 3 ~ 6백만원)	5 ~ 10	10%	624~960 (약 31.2 ~ 48백만원)	52 ~ 80	30%	120~216 (약 6 ~ 10.8백만원)	10 ~ 18	15%	960 초과 (약 48백만원 초과)	80 초과	35%	216~384 (약 10.8 ~ 19.2백만원)	18 ~ 32	20%			
연 소득(백만동)	월 소득(백만동)	세율	연 소득(백만동)	월 소득(백만동)	세율																															
0~60 (약 0 ~ 3백만원)	0 ~ 5	5%	384~624 (약 19.2 ~ 31.2백만원)	32 ~ 52	25%																															
60~120 (약 3 ~ 6백만원)	5 ~ 10	10%	624~960 (약 31.2 ~ 48백만원)	52 ~ 80	30%																															
120~216 (약 6 ~ 10.8백만원)	10 ~ 18	15%	960 초과 (약 48백만원 초과)	80 초과	35%																															
216~384 (약 10.8 ~ 19.2백만원)	18 ~ 3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자 - 기타소득에 대한 세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가능 소득</th><th>세율</th><th>과세가능 소득</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사업소득</td><td>0.5% - 5% (업종별 상이)</td><td>저작권 소득</td><td>5%</td></tr> <tr> <td>이자 / 배당</td><td>5%</td><td>프랜차이즈 / 로열티 소득</td><td>5%</td></tr> <tr> <td>유가증권(주식)의 양도</td><td>매각대금의 0.1%</td><td>상금 소득</td><td>10%</td></tr> <tr> <td>유한회사 지분의 양도</td><td>순이익의 20%</td><td>상속 / 증여 소득</td><td>10%</td></tr> <tr> <td>부동산의 양도</td><td>매각대금의 2%</td><td></td><td></td></tr> </tbody> </table>							과세가능 소득	세율	과세가능 소득	세율	사업소득	0.5% - 5% (업종별 상이)	저작권 소득	5%	이자 / 배당	5%	프랜차이즈 / 로열티 소득	5%	유가증권(주식)의 양도	매각대금의 0.1%	상금 소득	10%	유한회사 지분의 양도	순이익의 20%	상속 / 증여 소득	10%	부동산의 양도	매각대금의 2%								
과세가능 소득	세율	과세가능 소득	세율																																	
사업소득	0.5% - 5% (업종별 상이)	저작권 소득	5%																																	
이자 / 배당	5%	프랜차이즈 / 로열티 소득	5%																																	
유가증권(주식)의 양도	매각대금의 0.1%	상금 소득	10%																																	
유한회사 지분의 양도	순이익의 20%	상속 / 증여 소득	10%																																	
부동산의 양도	매각대금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거주자에 대한 세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가능 소득</th><th>세율</th><th>과세가능 소득</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근로소득</td><td>20%</td><td>부동산의 양도</td><td>매각대금의 2%</td></tr> <tr> <td>사업소득</td><td>1% - 5% (업종별 상이)</td><td>저작권 소득</td><td>5%</td></tr> <tr> <td>이자 / 배당</td><td>5%</td><td>프랜차이즈 / 로열티 소득</td><td>5%</td></tr> <tr> <td>유가증권(주식)의 양도</td><td>매각대금의 0.1%</td><td>상금 소득</td><td>10%</td></tr> <tr> <td>유한회사 지분의 양도</td><td>매각대금의 0.1%</td><td>상속 / 증여 소득</td><td>10%</td></tr> </tbody> </table>							과세가능 소득	세율	과세가능 소득	세율	근로소득	20%	부동산의 양도	매각대금의 2%	사업소득	1% - 5% (업종별 상이)	저작권 소득	5%	이자 / 배당	5%	프랜차이즈 / 로열티 소득	5%	유가증권(주식)의 양도	매각대금의 0.1%	상금 소득	10%	유한회사 지분의 양도	매각대금의 0.1%	상속 / 증여 소득	10%						
과세가능 소득	세율	과세가능 소득	세율																																	
근로소득	20%	부동산의 양도	매각대금의 2%																																	
사업소득	1% - 5% (업종별 상이)	저작권 소득	5%																																	
이자 / 배당	5%	프랜차이즈 / 로열티 소득	5%																																	
유가증권(주식)의 양도	매각대금의 0.1%	상금 소득	10%																																	
유한회사 지분의 양도	매각대금의 0.1%	상속 / 증여 소득	10%																																	

7 베트남 Tax incentive

#	구분	내용	비고
1	장려 [지역]	1) 적격 산업단지 (Industrial Zone) 의 신규 투자 2)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지정) 3) 경제지역(Economic Zone) / 첨단기술지역(High-Tech Zone) / 특히 낙후된 지역 (지정)	1) 2년 면제 + 4년 50%감면 2) 10년간 우대세율17% / 2년 면제 + 4년 50%감면 3) 15년간 우대세율10% / 4년 면제 + 9년 50%감면
2	장려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적 개발이 장려되는 산업체를 제조하는 제조기업의 신규 투자 또는 확장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건#1] 하이테크 인센티브 : 제품이 하이테크 법률상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첨단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제품에 해당); 또는 [요건#2] 산업지원제품 : 제품이 의류, 섬유, 신발, 전자부품, 자동차 조립 및 기계 등 개발이 우선시되는 산업을 지원하는 제품 생산으로 인정 시 	• 15년간 우대세율10% / 4년 면제 + 9년 50%감면
3	[대규모]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투자자본 6조동(약 3천억원) 이상 + 설립허가 후 3년 내 자본금 완납된 프로젝트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 개시 후 4년 차까지 최소 연 매출액 10조동 (약 5천억원) 달성, 또는 2) 영업 개시 후 4년 차까지 최소 고용인원 3,000명 달성 총투자자본 12조동(약 6천억원) 이상 + 설립허가 이후 5년 내 자본금 완납된 프로젝트로, 관련 법률들에 따라 장려기술로 등록된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 15년간 우대세율10% / 4년 면제 + 9년 50%감면
4	신투자법상 특별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법에 명시된 R&D 및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부여 (더 오랜 기간, 더 큰 혜택) 법인세 혜택은 다양한 기준 층족 여부에 따라 달라짐 (요건 층족 어려움) 	• 특별인센티브 종 가장 유리한 패키지의 경우 : 37년간 우대세율5% / 6년 면제 + 13년 50%감면
5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한 경우, 우대세율 적용 기간 연장 가능 (총리 승인 등) 낙후된 지역에서의 특정 공공영역 사업 (예: 교육, 의료사업)의 경우, 조건 충족시 프로젝트 전체기간에 대해 10% 우대세율 적용 가능 세제혜택 대상 활동에서 최초 수익(매출) 창출 이후 3년 내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4 번째 연도부터는 강제적으로 조세면제/감면 개시 적용 제조, 건설 및 운송사업에서 일정 인원 이상의 다수 여성직원 또는 소수민족 채용시, 추가적 조세감면 혜택 부여 	• 법률에서 규정한 조건 충족 필요

8 베트남 세무조사 및 가산세

세무조사 및 가산세

#	구분	내용	비고
1	세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행해지며, 수년의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음 세무조사에 앞서 과세당국은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세무조사의 시기 및 대상범위를 통보하게 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조사시 실무상 유의할 사항은 하기 참조
2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세법 위반(tax offences)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 존재 과세당국에 의해 적발된 (예: 세무조사 등을 통한) 차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과소신고 세액에 대해 20%의 가산세 부과 지연납부가산세 (연체이자)는 0.03%/일 (연간 약 11% 수준)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행정별 성격의 소액 가산세부터, 추가 납부 세액에 다양한 배수를 적용하는 거액의 가산세까지 존재

(참고) 세무조사시 유의사항

	해야 할 사항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준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산세 위험 또는 세법 미준수 사항 존재 여부 평가를 위해 과거 세무신고서 및 관련 서류 검토 세무조사시 발생 가능 이슈들에 대한 최선의 대응 방안 마련. (타사의 질의회신 및 선례들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국의 세무조사팀은 기존 질의회신 및 선례는 특정한 회사에 대한 것이고, 다른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하며 거부할 수 있으나, 해당 세무조사팀이 과거의 결정내역과 선례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고, 조정사항 제시 시에도 재고의 여지를 제공할 수 있음 회계장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문서로 출력하여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조사는 공지된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함. 납세자는 조사 범위를 벗어난 잠재적인 이슈들을 언급하거나, 조사범위를 벗어난 서류를 제공해서는 안됨
필드워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책임자(CFO) 또는 법인장(General Director)은 (1) 세무조사팀을 맞이하고, (2) 세무조사의 목적을 이해하며, (3) 세무조사 관련 공지사항을 듣기 위해, 세무조사 첫날에 반드시 조사팀과의 회의에 참석해야 함 세무조사 동안 조사팀을 밀접하게 대응할 때, 적어도 한 명 또는 두 명의 숙련된 회계 직원 및/또는 회계장이 상근해야 함. 담당 직원은 (1) 회사의 사업활동을 이해하고, (2) 회사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세법 지식이 있으며, (3) 협상 및 의사소통 능력을 갖춰야 함 요청받은 문서들이 미비되어 있거나 아직 적절히 작성/검토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조사팀에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조사팀으로부터 사전에 답변을 준비하지 못한 질문을 받았을 경우, 담당자는 즉답을 하지 말고, 해당 이슈를 검토한 후 조사팀에게 답할 수 있도록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함

9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 동향

베트남의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 경과

#	시점	내용	비고
1	2023년 7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재무부(MoF), 대중 의견수렴을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정책에 대한 결의안 초안 발표 OECD에서 발표한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 Pillar 2 모델에 따라, Pillar 2 적용 대상 다국적 기업들은 <u>법인이 소재한 관할권별로 15% 최저 유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함</u> 동 결의안은 Pillar 2 모델로 OECD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며, 두 가지 주요 규칙 (i) <u>QDMTT(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u> 및 (ii) <u>IIR (Income Inclusion Rules, 소득 산입규칙)</u>을 제시 두 가지 규칙 모두 Pillar 2가 전세계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베트남의 세수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u>QDMTT는 해외 기업의 베트남 내 투자를 대상</u>으로 하는 반면, IIR은 베트남 기업의 해외 투자를 대상으로 함 (세부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 표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의안에 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제안
2	2023년 11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국회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정책에 대한 결의안 승인 (<u>QDMTT 및 IIR 제도 공식 승인</u>) 베트남에 투자한 많은 국가들(예: 일본, 한국 등)이 2024년부터 IIR를 도입할 것임을 공표한 점을 감안하여 베트남의 세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법인세가 중앙정부 예산 및 지방정부 예산으로 배분되는 것과는 달리 동 추가세는 중앙정부 예산에 귀속 적용 대상 납세자는 (1) GloBE 정보 신고, (2) 추가적 법인세 신고, (3) 상이한 회계기준 적용으로 발생하는 차이에 대한 설명을 제출 결의문은 OECD의 GloBE 규칙과 동일하게, 전환 기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CbCR) 세이프하버 규칙 도입 → 전환 기간 동안 특정 요건 충족시 QDMTT/IIR 제도 하 추가 납부세액 없음 전환 기간 동안 세금 신고 관련 행정 페널티 미적용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의안 <u>2024.1.1부터 시행</u>
3	2024년 11월말 -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재무부(MoF), <u>글로벌최저한세 시행령 초안 (draft Decree) 발표 및 의견 수렴</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DMTT 목적으로 연결재무제표에 사용되는 회계기준 적용 (구성기업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허용/승인된 다른 회계기준 (VAS 등) 적용 가능하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유의적 차이 조정 필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u>2024 회계연도부터 시행</u> 규정

9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 동향, 계속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주요 내용

구분	QDMTT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IIR (소득산입규칙)
적용 대상 납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회계연도 이상에 있어 <u>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외국 최종모회사(Ultimate Parent Entity, UPE)</u>의 다국적 기업그룹의 베트남 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연도 중 저과세(low-taxed) 자회사를 (직접, 간접적으로) 소유하며,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회계연도 이상에 있어,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u>베트남 최종모회사(UPE) 또는 베트남에 소재한 중간모회사 또는 부분 소유 모회사</u>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대상 납세자는 추가 세율(top-up tax percentage, 15%에서 베트남에 소재한 모든 구성기업의 실효세율을 차감한 율)에 매 회계연도의 초과이익(excess profit)을 곱하여 산출되는 <u>추가 세액을 납부</u> 베트남의 글로벌 세원잠식방지(GloBE) 소득, 초과이익 및 실효세율의 계산은, OECD의 GloBE 규칙에 따라, 이익/손실 상태와 관계 없이 모든 구성 기업들을 참조하여 결정 모든 구성기업들의 (1) GloBE 매출이 1천만 유로 미만이면서, (2) GloBE 이익/손실이 해당 회계연도에 손실을 보이거나 1백만 유로 미만인 경우, → QDMTT 납부액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 대상 납세자는 해당 회계연도에 저과세 구성기업에게 할당되는 <u>추가 세액을 납부</u>
베트남 세무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대상 납세자는 <u>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u> QDMTT 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다국적 기업이 베트남에 하나 이상의 구성기업을 소유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베트남에서 QDMTT를 납부할 하나의 기업을 지정해야 함 (기한 내 미지정 시, 베트남 과세 당국은 책임 부과를 위해 다국적 기업의 해당 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 내에 한 구성기업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대상 납세자는 <u>회계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u> IIR 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적용 첫 해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8개월 이내)

9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 동향, 계속

투자 지원 펀드 시행령 (Decree on Investment Support Fund) 제정 – 2024부터 시행

- 외국 투자자 유치 및 특정 부문 투자 장려를 위해, '24년말 베트남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된 새로운 시행령(Decree) 제정
- 하이테크 산업의 적격 납세자에게 현금지원을 제공하는 기금이 설립될 예정
(베트남의 글로벌최저한세 정책의 적용 등에 따른 정부의 추가 세수입이 동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

납세자 유형 자격요건	a 첨단 기술 기업	b 첨단 기술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	c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투자 프로젝트	d R&D 센터 프로젝트
매출액 규모 (최소 연 매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칩, 반도체 및 AI 데이터센터 분야 프로젝트의 경우, <u>최소 10조 동 (약 3.9억 USD)</u> 기타 프로젝트의 경우, <u>최소 20조 동 (약 7.8억 USD)</u>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투자 자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칩, 반도체 및 AI 분야 프로젝트의 경우, <u>최소 6조 동 (약 2.35억 USD)</u> 기타 프로젝트의 경우, <u>최소 12조 동 (약 4.7억 USD)</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3조 동 (약 1.18억 USD)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의 경우, (상기) 매출 및 투자 자본 요건이 면제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리에 의해 개발이 장려되는 첨단기술 목록 및 첨단기술제품 목록에 속하는 제품/기술을 보유한 기업/프로젝트 마이크로칩 설계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에서 운영 시작 한 지 5년 이내에 최소 300명의 베트남인 엔지니어와 관리인력 고용 - 매년 최소 30명의 베트남인 엔지니어들에게 마이크로칩 설계 부문에 대한 교육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리 목록에 있는 첨단기술 및 제품을 창 출하기 위한 R&D 활동 수행

9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 동향, 계속

투자 지원 펀드 시행령 (Decree on Investment Support Fund) 의 주요 내용

#	구분	내용	비고
1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령에서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지원을 제공 [유형 1] 연간 운영 비용에 대한 지원 → 일반적인 하이테크 산업의 기업들 대상 [유형 2] 초기 투자 원가에 대한 지원 →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산업 내 R&D 센터 보유 기업 대상 두 가지 유형 모두를 충족하는 기업은 한 가지 유형만 선택 가능 각 수혜자는 정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최대 5년 동안 현금 지원 수령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현금 지원은 법인세 면제
2	[유형 1] 연간 운영 비용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는 다음의 비용에 대한 현금 지원 수령 자격 부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및 인적 자원 개발 비용: 베트남 인력에 대해 총 비용의 50%를 한도로 함 연구 개발 비용: R&D 비용의 규모와 납세자 범주에 따라 적격한 R&D 비용의 1%- 30%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신규 고정자산 원가의 1%-10%이며, 고정자산 원가 및 납세자의 범주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투자프로젝트의 총 투자자본의 0.5%를 한도로 함 첨단제품 제조원가: 수익, 인력 및 납세자 범주에 따라, 첨단기술 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가치가 부가(*)된 제조원가의 1%-3%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총 비용의 25%를 한도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부가가치 : 해외 업체에 지불되는 로열티/ 기술이전수수료, 수입자재 원가를 제외한, 제조된 첨단제품의 총 판매원가
3	[유형 2] 초기 투자 원가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자유형 d (R&D 센터 프로젝트)에 해당하고, 반도체 및 AI 영역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에 해당 지원은 총 초기 투자 원가의 50%를 한도로 함 	

4

베트남 회계(Accounting)

주요 사항



1 베트남 회계 환경

#	구분	내용	비고
1	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26 개의 베트남 회계기준(VAS) 존재 동 기준들은 모두 2001~2005년 사이에 발표되었으며, 각각 과거 국제회계기준(IA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을 기반으로 하되, 베트남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직 금융상품, 자산손상, 공정가치 등 주요 회계기준 미발표
2	회계법, 실무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에서는 ‘회계법(Accounting law)’이 국회에서 발행한 가장 상위의 회계규정 회계 이슈들은 다양한 시행령(decrees), 시행규칙(circulars), 결정문(decisions), 공문(official letters), 그리고 베트남 회계기준 (Vietnamese Accounting Standards)에 따라 추가적으로 규정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펀드매니저 및 투자기금 등 산업별 회계지침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 지침은 베트남 중앙은행에서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의 회계 체계는 원칙중심(principles-based) 보다는, 규칙중심(rules-based)
3	회계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 회계기록은 베트남어로 구비되어야 하나, 외국어와 결합되어 구비 가능 [회계기간]: 일반적인 법인의 회계기간은 12 개월. 신설 기업의 최초 회계기간은 인허가일로부터 15개월 초과 불가 (최종 회계기간 또한 최대 15 개월) [통화]: 회계기록은 일반적으로 베트남 동화(VND) 기준으로 구비되어야 함. 주로 외화로 대금을 수취하고 지급하는 기업은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VND와 다른 통화를 기준으로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 작성 선택 가능 [문서화]: 회계기록은 문서 또는 전자파일로 보관 가능. 전자문서 사용 법인은 보관 목적으로 회계기록을 인쇄할 필요 없음 [인감]: 기업은 공식 법인인감의 형태, 수량, 내용 결정 가능 (회사 인장의 관리, 사용 및 보관에 있어 정관을 준수해야 함) [보관]: 기업의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문서는 5 년 / 회계자료, 회계장부는 10 년간 보관 필요 회계기록의 미비는 VAS 미준수 평가의 근거가 됨 → 과세당국은 VAS 미준수를 법인세 인센티브의 철회, 비용의 손금불인정, 매입부가세 공제/환급 거부를 포함한 세액 재산세 및 가산세 부과의 근거로 처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USD 등 외화를 회계통화로 사용하는 회사는, 법정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외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특정 규정에 따라 VND 기준 재무제표로 변환 필요
4	재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VAS 하에서 작성되는 재무제표의 기본구성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 주석(자본변동내역 공시를 포함) 각 기업은 회계법 및 관련 규정들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회계장(chief accountant)을 임명해야 함 (연차 재무제표상 회계장 및 법정대표자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제표 사본은 회계연도 종료 후 90 일 이내에 지역 당국에 제출 필요

1 베트남 회계 환경, 계속

#	구분	내용	비고
5	회계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독립적 회계법인으로부터 연차재무제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외국인 투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금융기구,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보험중개회사, 외국 손해보험회사의 지점 - 공기업, 증권 거래 및 발행 기관, 상장회사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 - 국영기업, 중요한 국가적 프로젝트 및 국가예산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 연차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관련 인허가 당국, 재무부 (MoF), 지방 세무서, 통계청 및 기타 관련 당국에 제출되어야 함 3년 연속으로 특정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공인회계사는 교체되어야 함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의 경우 5년 연속감사 수행 후 [회계법인] 교체의무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은 국제감사기준을 기초로 하고 일부를 현지에 맞게 조정한 47 개의 감사기준 발행 기업은 회계연도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예: 12월말 법인의 경우 9월말까지) 독립 회계법인과 외부감사계약 체결

VAS	IFRS	
<p><u>Laws on Accounting 2015</u></p> <p><u>VAS: 26 개 기준</u></p> <p>회사별 회계처리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Circular No. 200/2014/TT-BTC for general corporates. Decree 57/2012/ND-CP, Circular 05/2013/TT-BTC and Circular 22/2017/TT-NHNN, etc for credit institution Circular 334/2016/TT-BTC for securities companies. Circular 232/2012/TT-BTC for non-life insurance companies, Circular 199/2014/TT-BTC for life insurance companies. Circular 107/2014/TT-BTC for oils and gas. 그 외 다수 	<p>IAS: 29 개 기준</p> <p>IFRS: 16 개 기준</p> <p>Interpretations on the application of IFRS by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and IFRIC)</p> <p>지속적인 수정 및 업데이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VAS 2001년 최초 제정 VAS 는 (구) IAS 2003 에 많은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후 개정 및 업데이트 사항은 반영하지 않음 VAS 는 SIC, IFRIC과 같은 해석서가 존재하지 않음 VAS 는 베트남 내 기타 규정들에 의해 보충되며, 각 규정간 상충되는 내용들이 발생할 수 있음

2 주요한 회계기준 차이 (K-IFRS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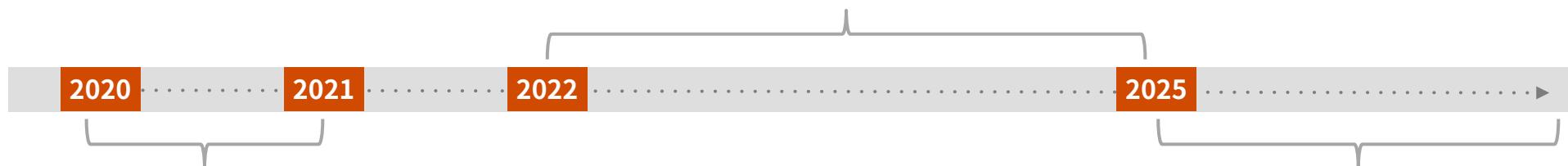
#	구분	K-IFRS	베트남 회계기준/실무
1	손상차손(impairment) 인식 (특히 유형자산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 손상의 징후 발견시 손상검사 수행 회수가능액 < 장부금액 → 손상차손(당기비용)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상차손 인식이 허용되지 아니함
2	공정가치 (Fair Value)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으로 공정가치 평가주의 (Level 1,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적원가 개념 (회계법상 공정가치 개념 소개는 되었으나, 구체 지침 미발행)
3	소액 자산의 유형자산 인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자산 인식을 위한 통일된 최소 기준 금액 없음 대부분의 그룹 회계정책상 유형자산 인식을 위한 Threshold가 없거나, VAS 기준 (VND 30M)과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자산 인식을 위해서는, 개별자산 기준으로 취득금액 VND 30M (약 150만원) 이상 (Circular 45) → Threshold 미만시: 일시비용화 or 3년 이내 적정기간 상각
4	유형자산 내용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에 따라 사용 가능하게 된 기간 매 회계연도말 재평가 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 그룹별 구체적 유형자산 내용연수 범위 규정 (Circular 45) → 범위 외의 내용연수는 당국 승인사항 (1회에 한해 변경 가능)
5	비유동성 자산/부채 잔액 (장기차입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효이자율 법으로 현재가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적 원가
6	금융수익/금융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외손익으로 분류 (영업이익 계산시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손익으로 분류 (영업이익 계산시 반영)
7	리스이용자의 리스회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IFRS 16 도입에 따라, 리스이용자는 과거의 운용리스 회계처리 적용 불가 → 리스 자산/부채 모두 인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RS 16 이전의 회계처리 기준과 거의 유사 운용리스/금융리스를 구분하며 각기 다른 회계처리 인정

3 베트남의 IFRS 도입 계획 및 현황

2020년 3월 16일 결정문(Decision No.345/QD-BTC)에 따른 재무부의 IFRS 도입계획

Phase 1: 자발적 도입기간(시범실시기간) (2022 – 2025)

- 대규모 국영기업 (state-owned corporations (“SOE”)), 상장(공개) 기업 등에 IFRS 기준의 연결 재무제표를 도입하는 것이 권고
- FDI (외국투자기업)에는 IFRS 기준의 별도 재무제표 도입이 권고



준비기간 (2020 – 2021):

- 2022년부터 IFRS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로드맵** 이행에 필요한 준비 수행
 - IFRS 회계기준의 **베트남어 번역본 발간, 교육, IFRS 이행 가이드라인 구축** 등 포함

Phase 2: 의무 도입 (2025년 이후) (*)

- **연결 FS** : 국영기업, 상장(공개)기업 및 기타 지정 기업들의 경우 IFRS 기준 연결FS 의무 도입
- 재무부는 IFRS 하 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방침

- 현재, 관련 일정은 계속 delay되고 있는 상황 (공식적 발표 또는 구체적 세부계획 발표는 아직 없으며,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
: 2025년부터의 의무도입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추후 진행 상황 모니터링 필요

5

삼일PwC

동남아시아 비즈니스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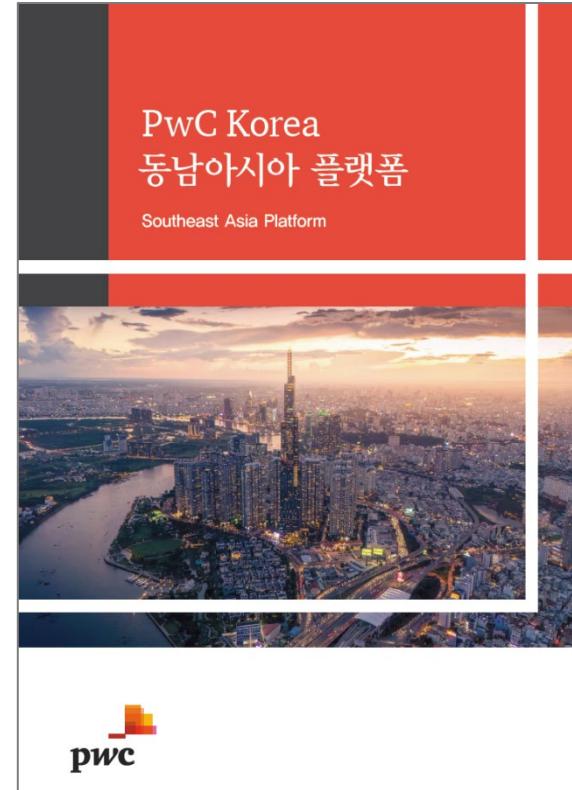


삼일PwC 동남아시아 비즈니스 플랫폼 소개

진출 단계별 자문 서비스

[1] 사전 검토	[2] 투자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 및 사업환경/경쟁사 조사• 최적 입지평가, 공단 협상 지원• 사업 타당성 평가• 거래구조/투자구조 관련 현지 compliance, risk 검토 및 최적구조 결정• 투자에 따른 환경 및 법 규정의 검토• 적용가능 투자인센티브 항목 및 최대 효익 달성을 위한 조건 검토• 현지 Supply chain 및 벤더 조사• 광범위한 프로젝트 전반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PMO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법인 설립 지원• 투자인센티브 협상 지원 (Tax/Non-Tax)• 세무원가(부가세, 관세, 외국인 계약자세, 이전가격 등) 고려 사업모델 수립 지원• 현지 협력사 평가(현지 평판, compliance 준수 여부, 생산능력, 제공 정보의 신뢰성, 재무정보 등)• 현지 compliance checklist (세무, 법률, TP, 관세, 외환관리 등)• 보세지역신청, FTA 관세 혜택 위한 조건 분석 및 신청 지원• 신설 또는 인수법인의 기능별 운영준비과제 수립 및 점검 등
[3] 사업 운영	[4] 투자 회수 및 사업 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세무신고 및 Tax Planning 자문• 세무조사 대응• 현지법인 진단 (현지 규정에 따른 Compliance 및 본사 정책 기반 적절성/건전성 진단, 부정적발 진단, 내부감사 대행 등)• 프로세스 개선 자문 (노무, 환경, 원가절감, 물류, supply chain 등 주요 경영관리 사항에 대한 컨설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분 또는 자산 매각 종합자문 (한국 및 베트남 세부담 최소화)• 현지 철수 전 compliance 점검 (세무, 관세, 법률, 노무, reputation 등)• 사업구조조정/이관 방안 (합병, 분할, 감자, 청산, 이관 등) 검토/실행 지원• 현지법인 폐쇄 지원• 프로젝트 전반을 효과적/효율적으로 관리하는 PMO 지원 등

삼일PwC - 동남아시아 비즈니스 플랫폼 (홈페이지, 브로슈어)



* 세부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www.pwc.com/kr/ko/services/overseas-business/southeast-asia-business.html>

Author Contacts

삼일PwC 동남아시아 비즈니스 플랫폼

이무열 Director

mooyeol.lee@pwc.com

삼일PwC 경영연구원

이은영 상무

Eunyoung.lee@pwc.com

오선주 수석연구위원

sunjoo.oh@pwc.com

Business Contacts

삼일PwC 동남아시아 비즈니스 플랫폼

스티븐정(정승민) Partner

steven.jeong@pwc.com

02-3781-2551

김홍현 Partner

hong-hyeon.kim@pwc.com

02-709-3320

이무열 Director

mooyeol.lee@pwc.com

02-709-0475

동남아 현지 파견 Korean Business Network

베트남 (HCMC)

박준형 Senior Manager

park.junhyung@pwc.com

베트남 (HANOI)

김민걸 Manager

kim.mingul@pwc.com

말레이시아, 필리핀

손한희 Director

hanhee.s.son@pwc.com



www.samil.com

삼일PwC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PwC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PwC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PwC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502A-RP-011

© 202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